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673호

의 안 명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10. 25.

## 주 문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0월 25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욱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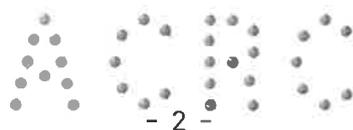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묵



[별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보다나은 국민권익위원회

---

##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202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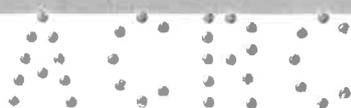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 황 .....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1.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	3
2.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6
3.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8
4.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	10
5.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	14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6



## I 추진배경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물 환경 부담금 관련 조례에 부담금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종류	내 용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수도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 10m <sup>3</sup> 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하수도법,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이용 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지하수법, 지하수 조례)

□ 부담금 관련 조례에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운영상 미비점이 존재

-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증가산금을 부과
  -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 누수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미비
  - 부담금 분할납부, 카드납부가 불가능하여 납부의무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가중
  -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이 여전히 존재
- 이에 따라 부담금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II 현 황

### □ 부담금의 의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 지자체 물 환경 관련 부담금 현황

- 지자체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종류	내용	관련규정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 수돗물 다량 이용 시설 설치, 이미 설치된 수도 시설의 개조·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 수도시설 손괴 또는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	수도법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 10m <sup>3</sup> 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하수도법령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이용 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	지하수법령 지하수 조례

### □ 지자체 물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20년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6,832	316,876	75,714	302,650	1,118	14,2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798	672,271	7,415	599,169	383	73,102
지하수이용부담금	302,391	12,545	268,164	12,158	34,227	387

### Ⅲ 문제점

#### 1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에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산금 :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 부과

##### 【 하수도법 】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 지하수법 】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 지방세징수법 】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법률에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존재

- 법률에서 정해진 가산금의 비율을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

###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가산금)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광역시 ○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상위 법률에 증가산금 부과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증가산금 부과를 규정하여 납부자에게 불합리한 금전 부담 발생

※ 증가산금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div 365\text{일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점용료·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군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선방안

- 법령에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 법률의 근거 없는 증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 ⇒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각 지자체)

### 【 참고 : 가산금 부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해석)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해당 체납금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이러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및 제60조(증가산금)를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하루 10m<sup>3</sup>이상 증가 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일부 지자체는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부담금을 감면

\* 가설건축물 :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건축물

※ (군산)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미부과

※ (충주) 가설건축물 등 존치기간이 정해진 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10~70% 감면하거나, 면제

-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감면기준 없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존재

## &lt;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외 규정 현황 &gt;

구 분	규정 있음	규정 없음	계
지자체수	8개	6개	14개

\* 전북 기초지자체 조례분석결과

-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민원 발생

## 【 관련 민원 】

- 조례에 의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계상되고 지급방법이 정해짐. 공사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다른 지자체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데 우리 시는 전부 내라고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21. 1월, 국민신문고)
-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개선 필요('20. 8월, 국민신문고)

- 10개월간 모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고함. 단기간 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방법을 알려주기 바람(21. 3월, 국민신문고)

## □ 개선방안

-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각 지자체)

【 참고 : 하수도사용자부담금 감면을 규정한 사례 】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조례 제19조제3항 이외의 가설건축물

9. ~ 13.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비례** 하여 부과
-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

※ (지하수 누수 시 감면 규정 사례)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text{누수량} = (\text{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text{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div 2$$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이 미비

## &lt;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현황 &gt;

구 분	규정 있음	규정 없음	계
지자체수	8개	10개	18개

\* 강원도 기초지자체 조례분석결과

- 부담금 감면 규정 미비로 이용자가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부담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 관련 민원 】

-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원인을 파악하던 중 지하수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측돼 실제 누수를 확인하는 공사를 실시함. 실제 공사를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길어 기존 청구된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였으니 환급 바람(20. 9월 국민신문고)

## □ 개선방안

-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제도 마련

### ⇒ 지하수 조례 개정(각 지자체)

#### 【 참고 : 지하수 누수 시 감면을 규정한 사례 】

#####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제12조의3(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주시 지하수 조례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① 부담금 분할납부

-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

※ (분할납부 규정 사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부담금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요금이 과다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부담 존재**

※ '20년 부과 건당 평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4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8,600만원

## 【 관련 민원 】

- 건물신축공사를 진행중인데 준공을 앞두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나와 일괄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 분할납부를 요청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단 안내를 받고 분할납부 중에 있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보다 금액도 많이 발생하여 일괄납부가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아 준공을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 ('21. 1월, 국민신문고)

- 부담금 납부 부담에 따라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도 징수되지 않는 **미납액 상당 발생**

※ '20년 부과된 부담금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118건(14,226백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3건(73,102백만원) 미납 발생

**<2020년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미납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6,832	316,876	4.12	75,714	302,650	4.00	1,118	14,226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798	672,271	86.21	7,415	599,169	80.80	383	73,102
지하수이용 부담금	302,391	12,545	0.04	268,164	12,158	0.05	34,227	387

\* 기재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② 부담금 카드납부**

-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수도법」, 「하수도법」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 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이에 따라 조례로 부담금의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의 카드납부 불허

※ 일부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2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북, 충북 산하 기초 지자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분석결과, 카드납부 규정이 있는 곳은 25개 지자체 중 9개에 불과(2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도 산하 22개 기초 지자체 지하수 조례 분석 결과, 카드납부 규정이 있는 곳은 7개에 그침(2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현금 마련 부담 등으로 부담금의 카드납부 허용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관련 민원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고 함. 지방세, 국세는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니,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19. 4월, 국민신문고)

■ 건물용도변경을 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500만원 가량 발생하게 됨. 적지 않은 금액이나 시청에서는 카드납부나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함. 국세나 지방세 모두 카드납부가 가능한데 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카드납부가 불가능한지 의문임(18. 1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

※ (예시) 부담금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등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각 지자체)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평균 부과금액이 소액(20년 기준 4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개선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정책제한\*)

\* 카드납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 카드사 납부 수수료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을 고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각 지자체)



**【 참고 : 부담금 분할납부, 카드납부를 규정한 사례】**

**▲ 부담금 분할납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부담금 카드납부**

**무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18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부담금 업무처리 단계별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서식을 조례·규칙으로 규정
- 동 서식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적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규칙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을 여전히 규정하여 사용

## &lt;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 &gt;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b>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b>		<b>하수도(사용료·징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b>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법인명	하수번호	정리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서공명자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법인명	주소	상호 또는 건물명
	성명(대표자)	대표자 성명	입태
	주소	전화번호	전화 번호
○○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군 하수도이용자부담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b>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b>		-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납부에 관한 - 협약 약서(제3조제5항 관련)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호
	⑥ 고지받은 일 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시 상수도원인가부담금 납부에 관한 협약서	

## □ 개선방안

-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과정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 ⇒ 상수도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 (각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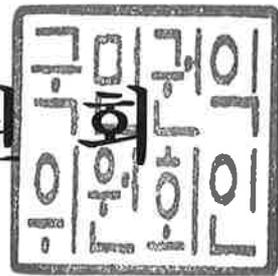
##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b>①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b> ○ 법령에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 법률의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22.4월
<b>②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b> ○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22.4월
<b>③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b> ○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제도 마련 ※ 지하수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22.4월
<b>④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b>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2.4월  정책제안
<b>⑤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b> ○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과정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22.4월

정 본 입 니 다 .

2021. 10. 26.

국 민 권 의 위 원



국 민 권 의 위 원